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문대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729

발의연월일: 2025. 6. 11.

발 의 자:문대림・김재원・주철현

곽상언 · 안도걸 · 이원택

송옥주·전종덕·서삼석

문금주 · 이상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, 구체적인 사용료 및 부과방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.

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면제 대상을 "시신"으로 한정하고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개장한 "유골"을 화장하는 경우는 그 대 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유골 화장 시에도 사용료가 면제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임.

이에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가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그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희생·공헌자에 대한 예 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의2).

법률 제 호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대하여는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의2(공설화장시설의 사용	제23조의2(공설화장시설의 사용
료에 대한 특례) 지방자치단체	료에 대한 특례)
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	
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	
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	
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. <u><후</u>	<u>이 경</u>
<u>단 신설></u>	우 제2호에 대하여는 유골을
	화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1. ·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